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2-06-23

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1가단206829 손해배상(기)
원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태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나빈
피 고 B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
담당변호사 이홍재, 정다원
변 론 종 결 2022. 3. 10.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1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'C'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복제한 후 2020. 11. 25.부터 D 사이트를 통하여 무단으로 배포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프로그램의 판매 가격 상당액인 18억 4,28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그 중 3,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부천시 E건물 F호(이하 '이 사건 사무실'이라 한다)의 인터넷 회선에서 'C' 프로그램이 D 사이트를 통해 배포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 외에도 소외 G, H, I이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무단으로 배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은설